

변경대비표(ETF)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설정 환매 변경	명칭 변경	운용역	결산	변동성	기업 공시 서식	스왑 거래 비용	기타 법개정 사항
1	미래에셋 TIGER 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2	미래에셋 TIGER 우주방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 후 : 미래에셋 TIGERK 방산&우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3	미래에셋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4	미래에셋 TIGER 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	○	○	○	○	○
5	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 4 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	-	○	○	○	○	○
6	미래에셋 TIGER 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H)	-	-	-	○	○	○	○	○
7	미래에셋 TIGER 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 INDXX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	-	○
8	미래에셋 TIGER 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9	미래에셋 TIGERS&P500 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	-	-	○	○	○	-	○
10	미래에셋 TIGER 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1	미래에셋 TIGER 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2	미래에셋 TIGER 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3	미래에셋 TIGER 유로스탁스배당 3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	-	○
14	미래에셋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	-	○
15	미래에셋 TIGERKEDI 혁신기업 ESG3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6	미래에셋 TIGER 미국캐시카우 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7	미래에셋 TIGER 일본반도체 FACTSET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8	미래에셋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19	미래에셋 TIGER 글로벌 AI 전력인프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20	미래에셋 TIGER 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21	미래에셋 TIGER 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22	미래에셋 TIGER 조선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23	미래에셋 TIGER 차이나 CSI300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	-	-	○	○	○	○	○
24	미래에셋 TIGER 차이나 CSI3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	-	○
25	미래에셋 TIGER 차이나과장판 STAR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	○	-	○	○	○
26	미래에셋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 SOLACTIVE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	○	-	-
27	미래에셋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	-	-	○	-	○	○	○
28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항생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2. 변경 사항:

- | | |
|--------------------------------|------------------------------|
| 1) 설정환매방식 변경(현물 → 현금) | 5)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 6)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 3) 운용역 변경 | 7) 합성 ETF 스왑거래 비용 및 기준일 업데이트 |
| 4)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8)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

3. 효력발생예정일: 2025년 03월 28일 (금)

4. 변경 내용:

- 1) 설정 환매 방식 변경(현물 → 현금)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u>금전 또는 증권</u> 을 말한다. 14.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u>현금, 구성종목 증권</u>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u>금전</u> 을 말한다. 14.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u>금전</u> 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추가설정·해지·일부 해지의 요청업무 및 <u>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업무</u> 등을 수행한다.	①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추가설정·해지·일부 해지의 요청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4조 (납부금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u>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u>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u>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 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u>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 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제>

<p>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p>	<p><삭제></p>
<p>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p>	<p><삭제></p>
<p>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p>	<p><삭제></p>
<p>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p>	<p><삭제></p>

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⑩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기간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다.

<삭제>

	<p><u>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u>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 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4. <u>제1호 내지 제3호</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5. <생략></p> <p>⑬ <u>제12항</u>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생략></p>	<p><삭제></p> <p>2. <u>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3. <u>제1호 내지 제2호</u>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4. <좌동></p> <p>⑥ <u>제5항</u>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좌동></p>
<p>제25조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p>	<p>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 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p>	<p>① <좌동></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역을 동시에 증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u></p>
<p>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p>	<p>①~⑥ <생략></p> <p>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u>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u></p>	<p>①~⑥ <좌동></p> <p>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u>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u></p>

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증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생략>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⑪ <생략>

⑫ <생략>

1. <생략>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 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증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좌동>

<삭제>

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⑪ <좌동>

⑫ <좌동>

1. <좌동>

<삭제>

<삭제>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

	<p>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⑬ <생략></p>	<p>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p> <p>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⑬ <좌동></p>
--	--	--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가. 매입	<p>[지정참가회사에서 설정을 통한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u>으로 설정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u>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u> 	<p>[지정참가회사에서 설정을 통한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금</u>으로 설정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11. 가. (1) 설정단위 (Creation Unit)	<p>(1) <생략></p> <p><u><설정단위의 변경 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 투자신탁을 최초 설정할 당시의 추적대상 지수가 7,000pt 일 경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해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은 5.25 억(7000pt × 150 × 1/100 × 설정단위 50,000 좌)이 될 것입니다. (환율 1 원=150 HKD 가정)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추적대상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4,000pt 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이 10.5 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수를 25,000 좌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p>(2)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산출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청구일 증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p>※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p> <p>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p>	<p>(1) <좌동></p> <p><u><삭제></u></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p> <p>-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입자산 작성시 반영</p> <p>-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 자산 작성시 반영 등</p> <p>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p>	
<p>제 2 부. 11. 가. (2)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p>	<p>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u>설정 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u>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p> <p>②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u>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③ 상기 ②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u>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합니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u></p> <p><u>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u></p> <p><u>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u></p>	<p>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p> <p>②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p> <p><삭제></p>

	<p><u>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u></p> <p><u>④ ~ <생략></u></p> <p><u>⑤ 투자자가 상기 ②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합니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u></p> <p><u>⑥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u></p> <p><u>※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u> <u>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u></p> <p><u>-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유가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 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u></p> <p><u>-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u></p> <p><u>⑦ 상기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u></p> <p><u>⑧ 상기 ⑤ 내지 ⑦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u></p>	<p><u>③ ~ <좌동></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	--	---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서 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⑧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상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⑥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상기 ⑤ 내지 ⑦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상기 ① 내지 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삭제>

<삭제>

④ 상기 ① 내지 ③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 내지 ⑩ ~ <생략>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설정 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 (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 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 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포에 게시합니다.

▶ 설정할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가 설정청구일에 납입 자산내역(PDF)를 매매하여 납입할 시점 (설정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홍콩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영업일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홍콩 유가증권시장의 영업일이 한국거래소의 영업일 과 불일치되는 기간에는 설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 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상기 ① 내지 ④ ~ <좌동>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교체기간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삭제>

<삭제>

<삭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설정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좌동>

	<p>▶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⑬ <생략></p>	<p><좌동></p> <p>⑥ <좌동></p>
제 2 부. 11. 나. 환매	<p>[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u>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u>으로 해지를 합니다.</p>	<p>[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u>현금</u>으로 해지를 합니다.</p>
제 2 부. 11. 나. (1) 이 투자신탁의 환매에 관한 사항	<p>①~⑥ <생략></p> <p>⑦ 상기 ②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 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u>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u>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 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증가기준 평가가액과 <u>환매청구일</u>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p> <p>⑧ 상기 ⑦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u>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u></p> <p><u>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u></p> <p>⑨ <생략></p> <p>⑩ 상기 ⑦ 내지 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에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p>	<p>①~⑥ <좌동></p> <p>⑦ 상기 ②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u>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거소에 공고하는</u>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증가기준 평가가액과 <u>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u>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p> <p>⑧ 상기 ⑦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p> <p><삭제></p> <p><u>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u></p> <p>⑨ <좌동></p> <p><삭제></p>

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 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가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상기 ① 내지 ⑩ ~<생략>

⑫ 상기 ⑪ ~<생략>

⑬ 상기 ① 내지 ⑫ ~<생략>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 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 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 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 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 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 기 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 으 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 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

⑩ 상기 ① 내지 ⑨ ~<좌동>

⑪ 상기 ⑩ ~<좌동>

⑫ 상기 ① 내지 ⑪ ~<좌동>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기간으로부터 전·후 3 영업 일간.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삭제>

<삭제>

	<p><u>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 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 하여야 합니다.</u></p> <p>▶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u>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u>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p> <p>▶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생략></p>	<p>▶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p> <p><좌동></p> <p><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③ <좌동></p>
--	---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TIGER <u>우주방산</u>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TIGERK <u>방산&우주</u>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TIGER퓨처모빌리티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김정수(책임), 구용덕(책임), 홍솔(부책임), 정의현(부책임)</u>	<u>홍솔(책임), 정의현(부책임)</u>

4)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u>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 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u>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u>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	-	<u>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u>

5)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no.	펀드명	변경 전 등급 표준편차	변경 후 등급 97.5% VaR	변경 전(%) 표준편차	변경 후(%) 97.5% VaR
1	미래에셋TIGER차이나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2	<u>23.01</u>	<u>49.60</u>
2	미래에셋TIGER글로벌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3	3	<u>13.02</u>	<u>26.69</u>
3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4차산업혁신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H)	2	2	<u>21.12</u>	<u>40.06</u>
4	미래에셋TIGER모닝스타글로벌자원생산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H)	2	2	<u>21.16</u>	<u>38.76</u>
5	미래에셋TIGER글로벌클라우드컴퓨팅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1	<u>30.06</u>	<u>60.11</u>
6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2	<u>23.76</u>	<u>44.06</u>
7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2	2	<u>16.27</u>	<u>37.63</u>
8	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	1	<u>30.90</u>	<u>75.65</u>
9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2	<u>15.47</u>	<u>38.70</u>
10	미래에셋TIGER여행레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	1	<u>25.31</u>	<u>53.26</u>
11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스배당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2	<u>15.92</u>	<u>35.42</u>
12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1	<u>32.90</u>	<u>64.62</u>
13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2	<u>20.41</u>	<u>43.14</u>
14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2	<u>18.25</u>	<u>46.46</u>
15	미래에셋TIGER차이나CSI30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1	1	<u>35.14</u>	<u>76.51</u>
16	미래에셋TIGER차이나CSI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2	<u>17.19</u>	<u>37.00</u>
17	미래에셋TIGER차이나바이오테크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1	1	<u>28.67</u>	<u>63.16</u>
18	미래에셋TIGER차이나항생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1	1	<u>34.35</u>	<u>71.43</u>

*2024.3.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

6)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신설>	(5)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 1]

*2024.3.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

[별첨1]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7) 합성 ETF 스왑거래 비용 및 기준일 업데이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부 10. 나. 특수위험	[수익조건 변경 위험] =	[수익조건 변경 위험] <u>업데이트</u>

8)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4. 나. 과세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중략>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u>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u>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함.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중략>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미래에셋자산운용(주)